

2022년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금융학회 (DGP연구회 분과) 발표자료 (2022.2.11.)

금융업 진출 빅테크에 대한 기관중심 감독방안에 대한 연구

- 금융기업집단에 대한 통합감독 행위규제를 중심으로 -

발표자: 강경훈 (동국대) & 양기진 (전북대)

진행 순서

- ▶ BIS의 빅테크 감독 제시방향
 - ▶ Activity-based vs. Entity-based approach
 - ▶ 금산결합 빅테크 관련 감독방향
- ▶ Entity-based approach
 - ▶ 중국사례: FHCs
 - ▶ 한국법(금융복합기업집단법)의 분석
- ▶ Activity-based approach
 - ▶ 영업행위, 고객정보의 취급
- ▶ 정책적 제언 (방향)

▶ BIS의 빅테크 감독 제시방향

- ▶ Activity-based vs. Entity-based approach
- ▶ 금산결합 빅테크 관련 감독방향

빅테크의 규제 필요성

▶ 빅테크의 성장과 위협

- ▶ 시장무결성 (market integrity), 공정경쟁 (fair competition), 금융안정성 (financial stability)을 위협
- ▶ 여러 금융 및 비금융 서비스가 몇몇 기술선진 플레이어에 의하여 집중적으 제공되는 추세로, 이러한 추세는 몇몇 시장 플레이어에게 잠재적으로 과도하게 의존하도록 함으로써 시장 경쟁은 물론,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을 증대 시킴
 - ▶ Amazon Web Services (AWS) 및 Microsoft Azure는 유럽, 미국, 중동 및 아프리카에서의 금융서비스용 공공클라우드 시장을 지배하고 있음

▶ 각국의 대응

- ▶ 국가들은 규제체계를 손보아 빅테크가 가하는 위험에 대처 중임
- ▶ 시장 무결성 보호, 소비자 보호, 개인정보 보호 및 기타 정책적 목표들

F. Restoy (Feb. 2021), pp.2-3;
Crisanto et al. (Sept. 2021), p.3

빅테크의 규제 추세

▶ 세계적 규제 추세

- ▶ 일반화된 것은 없음 (No generalised adjustment)
- ▶ 다만, 몇몇국가는 디지털뱅크 제도,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규제를 도입

▶ 규제 현황

- ▶ 일반적으로 핀테크/빅테크들은 정식 은행업 면허를 추구하지 않아왔음
- ▶ 이러한 비은행들(non-banks)은 자사가 제공하는 금융서비스 (지급, 신용, 크라우드펀딩, 자산관리, 투자자문 등)에 필요로 하는 면허를 취득
 - ▶ 이러한 면허는 전형적으로 그 '행위(activity)'에 기반한 라이선스에 해당
 - ▶ 예컨대, (1) 유럽/미국의 빅테크들은 지급서비스제공자(PSP)로의 라이선스를 보유, (2) 미국/중국에서 대부기능을 하는 핀테크회사들은 비은행 대부 라이선스를 보유

빅테크들이 보유한 면허 현황

Licence held ¹	European Union			Hong Kong SAR			Brazil			United Kingdom			United States			China		
	P	C	B	P	C	B	P	C	B	P	C	B	P	C	B	P	C	B
Google	✓									✓			✓					
Apple ²													✓					
Facebook	✓												✓					
Amazon	✓									✓			✓					
Ant Financial	✓			✓		✓	✓+			✓			✓			✓	✓	✓*
Baidu																✓	✓	✓*
JD.com						✓										✓	✓	
Tencent				✓		✓										✓	✓	✓*
NTT Docomo ³	✓		✓															
Rakuten ³	✓		✓										✓					
Mercado Libre							✓											

P = payments-related licence
 C = credit licence
 B = banking licence

F. Restoy (Feb. 2021), p.4 Table 1

앞의 표 관련 주식 <참고용>

- ▶ P = payments-related licence
 - ▶ For the European Union, payment institution (PI) or e-money institution (EMI); for Brazil, instituição de pagamento; for the United States, money transmitter, sale of cheques or money services business (governed primarily by state law); for China, third-party payment licence.
- ▶ C = credit licence
 - ▶ For Hong Kong SAR, money lender licence; for the United States, non-bank lender licence (state-level); for Brazil, sociedade de crédito direto or sociedade de empréstimo entre pessoas; for China, internet microlender or consumer finance licence.
- ▶ B = banking licence
 - ▶ For the European Union and the United Kingdom, CRD credit institution; for Hong Kong SAR, authorised institution; for Brazil, BCB approval under Resolution 4.122/2012 and Circular 3.649/2013; for the United States, National Bank Charter or state-level Bank Charter (commercial banks, savings banks and trust companies).
- ▶ ✓* Shareholding of big techs in these banks is limited to 30%.
- ▶ ✓+ Under application.

빅테크 면허 현황 (추세)

- ▶ 소비자 보호 및 자금세탁(AML)/테러자금 조달방지(CFT)
 - ▶ 통상적으로 빅테크들에게 이미 부과
- ▶ 건전성 규제
 - ▶ 일반적으로 최소자본금 규제 이상의 위험기반 건전성 규제(risk-based prudential requirements) 대상은 '아님'
- ▶ 경쟁촉진 규제
 - ▶ 일반적 반독점 규제를 넘어서는 특별한 규제는 없음
 - ▶ 다만 EU, 호주 등은 근래 오픈뱅킹 법제를 통과시켜 금융서비스 시장에서 은행과 비은행간 경쟁을 촉진

BIS: 감독방식 유형

▶ Activity-based approach

- ▶ Level-playing field의 추구
- ▶ 특정 시장부문의 참가자 전원에 대하여 동등(유사) 규제를 부과
 - ▶ 여신, 지급서비스, 투자중개, 투자자문 등
- ▶ 은행업계가 주장하는 경향

▶ Entity-based approach

- ▶ 일정한 정책적 목표에 기반 (금융안정성 추구 등)
 - ▶ 특정 면허를 가진 '기관(institutions)'을 전제하여 해당 기관에 부과
 - ▶ 은행면허를 가진 은행에 대하여 일정한 건전성 규제(prudential rules) 부과
- ▶ 금융부문의 대부분 규제는 위 양자의 혼합임

BIS: Entity-based rule 도입의 전제

- ▶ Entity-based rules 도입을 위한 전제
 - ▶ 경제나 금융시스템에 충분히 커다란 잠재적 영향(sufficiently large potential impact)을 가질 경우
 - ▶ 금융기관들의 결합재무제표(consolidated B/S)에 주목한 규제 의 필요
 - ▶ Principle 12 of the Core Principles for Effective Banking Supervision requires **adequately monitoring and, as appropriate, applying prudential standards to ALL ASPECTS of the business conducted by the BANKING GROUP WORLDWIDE.**
 - ▶ ‘그룹’ 차원에서의 감독기구의 위험탐지능력 및 통제권 필요
 - ▶ It includes **the SUPERVISOR’S ABILITY to IDENTIFY and ACT upon RISKS POSED by unregulated activities WITHIN the GROUP to the REGULATED ENTITY or to FINANCIAL STABILITY** (BCBS, 2016)
 - ▶ Because even when ACTIVITIES ARE SEPARATED into DIFFERENT LEGAL ENTITIES, the core activities of the bank are NOT sufficiently protected from risks stemming from ancillary functions.

F. Restoy (Feb. 2021), pp.7-8

Activity-based regulation의 적용현황

▶ 소비자 보호 측면

- ▶ 여신, 지급서비스, 투자중개, 투자자문 등에 있어서 은행과 다르지 않을 정도로 상당정도 유사한 규제 적용
- ▶ 예: EU의 PSD2 (Directive 2015/22366)
 - ▶ 지급서비스업자 (payment service provider)의 동등 규율
 - ▶ 계좌정보 서비스(AIS), 지급 이동서비스???(PIS), 송금 등

▶ AML/CFT

- ▶ 광의의 금융기관(암호자산 관련 포함)에 대해 국제적 기준 적용

Entity-based regulation의 도입이 필요한 경우

▶ Entity-based regulation의 도입 전제

- ▶ 금융기관이 여러 영업행위(서비스)를 결합하여 제공할 경우로서, 해당 서비스 각각에 대한 규제를 부과하는 것만으로는 연관 위험을 충분히 다스릴 수 없는 경우이어야 함
 - ▶ 예컨대 은행의 경우, 그 건전성 규제의 목적은 은행이 여러 영업행위를 결합하여 수행하는 만기, 유동성 및 기타 리스크 변환행위로부터 유발되는 금융안정성 리스크를 완화하려는 것임

▶ Entity-based approach

- ▶ 중국 사례: FHCs
- ▶ 한국법(금융복합기업집단법)의 분석

Entity-based approach: 중국 사례

- ▶ 중국은 새로이 entity-based 규제 방식 채택
 - ▶ 2020.9.11., 중국인민은행(PBC)는 금융지주회사 규제 시범조치(Trial measures on Regulation of Financial Holding Companies)라는 포괄적인 entity-based 규제를 통과
 - ▶ 동 조치를 통하여 PBC는 대규모 비금융회사들로서 금융서비스 영역에 상당정도의 이해관계(significant interests)를 갖는 회사들을 규율하고자 함 (p.17)
 - ▶ 동 조치는 2개 이상의 다른 유형의 금융회사(일정한 최소규모 요건 충족 필요)를 지배하는 회사들에 적용 (p.17)
 - ▶ 금융안정성 관련, 2개 이상의 금융회사(최소규모 등 요건 충족 필요)를 보유한 모든 기업은 FHC로 조직되고 관련 면허를 받아야 함 (p.2)
- ▶ 중국 빅테크의 금융지주회사(FHC) 편입
 - ▶ 빅테크는 그 금융업을 FHC로 재편(reorganize)하여야 함
 - ▶ 빅테크가 그 금융자회사를 통하여 수행하는 활동은 포괄적으로 감시대상 (p.2)

Crisanto et al., p.2, p.17

현행법: 금융복합기업집단법

- ▶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금융복합기업집단법')의 제정, 시행
 - ▶ 2020.12.29. 제정, 2021.6.30. 시행
 - ▶ 제정목적: '기업집단' 차원의 건전성 감독 (prudential regulation)
 - ▶ **개별업권별 감독으로 제거되지 않는 금융복합"기업집단" 수준의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내부통제·위험관리 및 건전성 관리 등을 규정**
 - ▶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 경영 및 금융시장 안정 도모 및 금융소비자 보호할 목적
- ▶ 주요내용 (감독 톨)
 - ▶ 제2장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지정 및 해제, 대표금융회사의 선정 및 그 업무 등
 - ▶ 제3장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등
 - ▶ 내부통제정책 수립 등, 내부통제체계, 위험관리정책의 수립 등,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체계
 - ▶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성 관리, 건전경영의 확보, 자본적정성 관리, 내부거래 및 위험집중 관리,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위험전이 관리
 - ▶ 제4장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
 - ▶ 감독, 검사, 감독 협의체의 운영, 보고 및 공시,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 관리실태 평가
 - ▶ 경영개선계획의 제출 및 계획 미제출·불이행시의 조치, 비공개정보 누설 등의 금지
 - ▶ 제5장 처분 및 제재절차

금융복합기업집단법의 열개

▶ 금융복합기업집단법의 주요내용

- ▶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정의 도입 (법 제2조제3호)
 - ▶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한 둘 이상의 금융회사로 구성된 집단으로서 동법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매년 지정** (법 제5조제1항)
- ▶ 금융복합기업집단 소속금융회사들이 자율적으로 **대표금융회사**를 정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정하지 못한 경우에 금융위원회가 선정 (법 제7조)
- ▶ 금융복합기업집단은 **기업집단 차원의 내부통제와 위험관리**를 위한 정책 및 기준을 수립 (법 제9조 및 제11조)
- ▶ 금융복합기업집단은 **기업집단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의 자기자본**을 갖추도록 함(법 제14조)
- ▶ 금융위원회는 **기업집단에 대한 효율적인 감독**을 위하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관계 부서로 구성된 감독 협의체를 운영 가능 (법 제19조)
- ▶ 금융위원회는 기업집단의 자본적정성 평가 결과가 일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 등에 해당 기업집단의 자본의 확충 등에 관한 사항을 담은 **경영개선계획 제출**을 명령 가능 (법 제22조)
- ▶ 경영개선계획 미제출 · 불이행 등의 경우 기업집단 소속 금융회사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조치권 (법 제23조)
- ▶ 금융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행정처분권 (법 제25조)

금융복합기업집단법의 기대효과

- ▶ ‘그룹(entity)’ 차원의 감독 도입
 - ▶ 현행 금융업권법에 따른 금융‘회사’ 중심 감독을 보완
- ▶ 금융그룹 간의 규제차익 완화
 - ▶ 금산결합그룹 차원의 감독 (위험관리, 내부통제)
- ▶ 금산결합/복합금융기업집단 포커스 감독
 - ▶ 기업집단에 대한 ‘그룹’차원의 감독실시
 - ▶ 기업집단 차원의 통합적인 위험관리 체계의 구축

금융복합기업집단법의 역할

▶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지정요건 (누적적) (법 제5제1항)

- ▶ 소속 금융회사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 ▶ 1. 영위하는 업(業) 요건: 다음 각 목의 업 중 둘 이상에 해당할 것
 - ▶ 가. 여수산업
 - ▶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
 - ▶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의 업무
 - ▶ 3)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의 업무
 - ▶ 4)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
 - ▶ 5)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
 - ▶ 6) 그 밖에 여신(與信) 또는 수신(受信)을 하는 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 (없음)
 - ▶ 나. 금융투자업
 - ▶ 다. 보험업
- ▶ 2. 최소 자산 사이즈 요건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의 합계가 5조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 ▶ 3. 개별 금융회사의 인허가 취득요건
 - ▶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한 금융회사가 하나 이상일 것
- ▶ 4. 자산의 질 (quality) 요건
 - ▶ 부실금융기관의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의 합계액에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실금융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금융회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일 것
- ▶ 5. 감독의 실익 요건
 - ▶ 금융회사들이 영위하는 여수산업, 금융투자업, 보험업 각각의 자산이나 자기자본의 비중·규모 및 금융관계법령의 내용·취지 등을 고려할 때 이 법에 따른 감독의 실익이 적은 경우가 아닐 것
 - ▶ 구체적으로, 여수산업·금융투자업 또는 보험업 중 자산총액(국내 금융회사만 해당) 합계가 가장 큰 업종을 제외한 다른 업종들의 자산총액 합계가 5조원 미만인 경우 등 (시행령 제6조제4항 제1호 및 감독규정 제5조 제1항 등)



금융업법상 ‘業’의 정의 <비배포>

▶ 은행법상 ‘은행업’

- ▶ “은행업”이란 예금을 받거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채무증서를 발행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업(業) (은행법 제2조 제1호)

▶ 보험업법상 ‘보험업’

- ▶ “보험업”이란 보험상품의 취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보험의 인수(引受), 보험료 수수 및 보험금 지급 등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생명보험업·손해보험업 및 제3보험업 (보험업법 제2조 제2호)

▶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

- ▶ “금융투자업”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신탁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業) (자본시장법 제6조 제1항)

빅테크 규율 관련 현행법상 문제점

▶ 금융복합기업집단법상 제기가능한 문제점

▶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요건 (법 제5조 제1항)

▶ 1. 영위하는 업(業) 요건: 다음 각 목의 업 중 둘 이상에 해당할 것

▶ 가. 여수산업

- ▶ 은행업, 종합금융회사업, 상호저축은행업, 여신전문금융업, 대부업

▶ 나. 금융투자업

▶ 다. 보험업

▶ 3. 개별 금융회사의 인허가 취득요건

- ▶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한 금융회사가 하나 이상일 것



▶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을 회피할 소지 있는 루프홀이 있는가?

- ▶ 사실상 은행업 (Shadow banking) 영위시 지정대상이 되는가?
- ▶ 맞춤형 광고를 통하여 사실상 금융투자상품 판매/대리업 영위시 지정대상이 되는가?

금융기업집단 규제 비교

금융그룹 규제 형평성 제고

	그룹 감독 여부	자본적정성산정방식	그룹차원 리스크 ²⁾ 규제	그룹차원 리스크 ²⁾ 추가자본
은행지주	그룹감독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연결)	규제	없음.
비은행지주	그룹감독	필요자본에 대한 자기 자본	규제	없음
복합금융그룹 ¹⁾	그룹감독	필요자가본에 대한 자기자본	규제	추가부가
동종그룹	개별업권감독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무	없음
은행모회사그룹	개별업권감독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연결)	무	없음

- 동종그룹 및 은행모회사 그룹에 대한 그룹 통합감독 여부
-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경우 그룹차원 리스크 추가자본 요구량의 적정성 여부

주 1) 금융지주, 은행 모회사 그룹 등 제외

2) 복잡성 및 interconnectedness로 인한 집중위험, 전이위험, 내부거래 등에 따른 위험

이재연 발표자료 (2018.10.17), 24면

EU의 금융그룹감독: 동종그룹 포함

- ▶ EU의 금융그룹 감독 (3유형)
 - ▶ 그룹 내 개별기관별(Level1) 감독
 - ▶ 동종그룹별(부문별, Level 2) 감독
 - ▶ 복합금융그룹(그룹별, Level3) 감독
- ▶ EU의 동종그룹별(Level 2) 감독
 - ▶ 감독대상
 - ▶ '은행 및 증권 그룹' 또는 '보험그룹'
 - ▶ 은행 및 증권 그룹에 대한 감독 : Banking Consolidation
 - ▶ 보험그룹에 대한 감독 : Insurance Groups Directive

금융/비금융 복합금융그룹 감독관련 이슈

- ▶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본적정량 산정
 - ▶ 금융부문과 비금융부문(상업 또는 제조업)이 혼재된 특성
 - ▶ 그룹 차원의 자본적정량 산정 등이 곤란
- ▶ 대책
 - ▶ 금융/비금융 자회사간 firewalls을 설치
 - ▶ 비금융회사 지분의 처분을 유도

금융복합 “기업집단” 차원의 자본적정성 관리

- ▶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최소자기자본 구비 의무**
 - ▶ 재무건전성을 확보 가능한 수준의 자기자본을 구비해야 (법 제14조 제1항)
- ▶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본적정성 점검/평가 의무**
 - ▶ **기업집단 수준의 추가적인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금융복합기업 집단 수준의 자본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여야 (법 제14조 제2항)
 - ▶ 고려사항
 - ▶ 1. 소속금융회사 간 **자본의 중복이용**
 - ▶ 2. 내부거래 또는 위험집중에 따른 **손실 가능성**
 - ▶ 3.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체계 또는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체계의 취약성에 따른 **위험의 전이 가능성**
 - ▶ 4. 소속비금융회사와의 이해상충 및 소속비금융회사의 재무·경영 위험 등으로 인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부실 가능성**
 - ▶ 5. 기타 통상적인 금융거래 외의 요인으로 인한 위험 발생 가능성

금융복합 “기업집단” 차원의 자본적정성 관리

- ▶ 금융복합기업집단 수준의 추가적인 위험을 고려한 자본적정성의 점검·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 제14조 제3항 제1문)
 - ▶ 동법시행령 제13조(자본적정성의 점검·평가 기준) 법 제14조제3항 전단에서 “자본적정성의 점검·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자본적정성 비율이 100퍼센트 이상일 것을 말한다.
 - ▶ 1. 자기자본의 현황 및 규모
 - ▶ 2. 중복자본의 현황 및 규모
 - ▶ 3.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최소한의 자기자본 규모
 - ▶ 4. 추가적인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자본의 규모
 - ▶ 금융복합기업집단 수준의 자본적정성의 점검·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을 고려 (법 제14조 제3항 제2문)
 - ▶ 추가적인 위험을 고려하는 사항이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체계와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체계에 대한 평가 결과가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의 ‘감경’요인이 되지 ‘아니’하여야 함

전이위험 이론: 기업집단 내 전이위험 산정

- ▶ 전이위험의 고려의무
 - ▶ 기업집단 수준의 추가적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요소의 하나로, 위험의 전이가능성, 즉 전이위험을 고려해야 (법 제14조제2항제3호)
- ▶ 전이위험 크기의 산정
 - ▶ 전이위험은 정성평가 중심 (정량평가 곤란)
 - ▶ 계량지표 위주의 평가 시 단순 체크리스트 방식 감독이 우려됨 (not 위험관리체계에 대한 평가)
 - ▶ '그룹위험 관리역량 평가' 결과를 대안지표로 사용 가능
 - ▶ 그룹위험 관리역량 평가 (정성평가)
 - ▶ 필요한 완충자본(buffer)의 크기를 산출
 - ▶ 위험관리 체계(30%), 자본적정성(20%), 위험집중·내부거래(20%), 지배구조·이해상충(30%) 등 4개부문, 18개 항목에 대한 평가 권고

이재연 발표자료 (2018.10.17), 23면

현행법: 금융복합기업집단용 자본산출을 위한 기본개념 <참고>

- ▶ 감독규정 제12조(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본적정성 기준) ① 이 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1. "자기자본합계액"이란 소속금융회사에 대하여 금융관계법령(이 법은 제외)에서 정하고 있는 자본적정성 기준 등에 따라 자기자본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 ▶ 2. "중복자본"이란 소속금융회사 간 출자금액(다른 회사를 경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소속금융회사가 다른 회사와 상호 출자한 경우로서 자본으로서의 활용가능성이 제약되는 출자금액 등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 ▶ 3. "통합자기자본"이란 자기자본합계액에서 중복자본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 ▶ 4. "최소요구자본합계액"이란 소속금융회사에 대하여 금융관계법령에서 정한 자본적정성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소속금융회사가 최소한으로 보유하여야 하는 자기자본 등을 합산(제2호의 중복자본에 대하여 최소한으로 보유하여야 할 자기자본은 제외한다)한 금액을 말한다.
 - ▶ 5. "위험가산자본"이란 법 제14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에 따른 금융복합기업집단 수준의 추가적인 위험에 대한 평가에 따라 금융복합기업집단이 추가적으로 보유하여야 하는 요구자본을 말한다.
 - ▶ 6. "통합필요자본"이란 최소요구자본합계액과 위험가산자본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 ▶ ② 영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자본적정성 비율이란 통합자기자본을 통합필요자본으로 나누어 산출한 비율을 말한다.
- ▶ ③ 제1항에 따른 자기자본합계액, 중복자본, 최소요구자본합계액 등의 구체적 산정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

자본적정성 기준: 감독규정 별표3 <발취>

- ▶ 1. 자기자본합계액의 산정
 - ▶ 가. 소속금융회사의 자기자본은 해당 금융관계법령에서 정한 **자본적정성 기준에 따라 산출한 자기자본으로 한다.**
 - ▶ 나. 금융관계법령에 별도의 자본적정성 기준이 없는 소속금융회사의 자기자본은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단서 생략>
 - ▶ ○ 자기자본 = 재무상태표상의 자기자본 - 무형자산 - 이연법인세자산
 - ▶ 다. 소속금융회사가 다른 소속금융회사의 종속회사이고, 지배회사인 다른 소속금융회사의 자본적정성 규제가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가목에 따라 산출된 지배회사의 자기자본에 종속회사의 자기자본이 이미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는 **종속회사에 대한 자기자본을 별도로 산정하지 않는다.** / 라. ~ 마. <생략>
- ▶ 2. 중복자본의 산정
 - ▶ 가. **소속금융회사 간에 보유한 보통주 주식** 및 보통주 주식 외에 해당 금융관계법령에서 정한 자본적정성 기준에 따라 자기자본으로 인정되는 항목에 대한 소속금융회사간 거래액(자기자본으로 인정되는 금액으로 한다)
 - ▶ 나. 소속금융회사가 다른 회사 등을 경유하여 동일 또는 다른 소속금융회사에 **순환 또는 우회하여 출자한 경우 해당 출자 금액**
 - ▶ 다. 해당 금융복합기업집단 **외의 회사와 자본증권 등을 상호 보유하는 경우로서 상호간에 체결된 약정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손실 보전을 위한 실질적인 자본으로서의 활용 가능성이 제약되는 경우 해당 보유액(손실 보전을 위한 자본으로서의 활용 가능성이 제약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독원장에게 증명한 경우에는 차감하지 않는다)**
 - ▶ 라. <생략>

자본적정성 기준: 감독규정 별표 <발취>

▶ 3. 최소요구자본합계액의 산정

- ▶ 가. **소속금융회사의 최소요구자본 = MAX** [해당 금융관계법령에서 정한 자본적정성 기준을 충족하기 위하여 최소한 보유하여야 할 자기자본, 해당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경영개선권고를 적용받지 않기 위해 보유하여야 할 자기자본]
- ▶ 나. 금융관계법령에서 **별도의 자본적정성 기준이 없는 소속금융회사의 최소요구자본**은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해외 현지법인인 소속금융회사는 소재지국의 감독당국이 별도의 자본적정성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기준을 충족하기 위하여 최소한 보유하여야 할 자기자본으로 하며, 소재지국의 감독당국이 별도의 자본적정성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회사의 사업내용과 유사한 국내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자본적정성 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 ▶ ○ **최소요구자본 = [재무상태표상의 자산(부외자산 포함, 제1호에 따라 자기자본에서 전액 공제되는 항목은 제외)] × 8%**
- ▶ 다. 소속금융회사가 다른 소속금융회사의 종속회사이고, 지배회사인 다른 소속금융회사의 자본적정성 규제가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가목에 따라 산출된 지배회사의 최소요구자본에 종속금융회사의 최소요구자본이 이미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는 **종속회사에 대한 최소요구자본을 별도로 산정하지 않는다.**
- ▶ 라. ~ 마. <생략>

▶ 4. 위험자산자본의 산정

- ▶ 위험자산자본은 <별표 4>에 따른 추가적인 위험평가에 따라 금융복합기업집단이 추가적으로 보유하여야 하는 자본을 말하며, 구체적 산정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위험자산자본: 감독규정 별표 4 (추가적 위험평가 기준)

평가 부문	세부 평가부문	평가항목(평가지표)	비중
계열회사 위험 (30%)	재무적 위험 ¹⁾	· 소속금융회사의 자본비율 · 소속비금융회사 ²⁾ 의 재무비율	20%
	비재무적 위험	· (소속금융회사, 소속비금융회사 ²⁾ , 대주주, 대표이사) 시행령 제4조의 금융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제재·처벌,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른 처벌 ⁴⁾	5%
		· 신용등급의 변동 폭 ⁵⁾	5%
상호 연계성 (50%)	소유 연계성	· 소속금융회사의 소속비금융회사에 대한 출자금액 비중	10%
		· 소속비금융회사의 소속금융회사에 대한 지분율	10%
	내부거래	· 소속금융회사의 내부거래 수익 비중	5%
		· 소속금융회사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액 비중	5%
		· 특정 계열회사에 대한 내부거래 수익 집중도	2.5%
		· 특정 계열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집중도	2.5%
	공동투자	· 소속금융회사의 공동투자 비중	5%
	출자구조	· 소유·출자구조의 복잡성	5%
인사교류	· 소속금융회사와 소속비금융회사간 임원 겸직 등 인사교류의 적정성	5%	

위험가산자본: 감독규정 별표 4 (추가적 위험평가 기준)

평가 부문	세부 평가부문	평가항목(평가지표)	비중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⁶⁾ (20%)	내부통제정책 및 기준	· 내부통제정책 수립 여부 및 법 제9조제1항 각호에 관한 사항 · 내부통제기준 마련 여부 및 시행령 제9조제2항 각호, 감독규정 제8조에 관한 사항	5%
	내부통제체계운 영	· 내부통제체계 운영의 적정성 및 법 제10조, 시행령 10조, 감독규정 제9조에 관한 사항	5%
	위험관리 정책 및 기준	· 위험관리정책 수립 여부 및 법 제11조제1항 각호에 관한 사항 · 위험관리기준 마련 여부 및 시행령 제11조제2항 각호, 감독규정 제10조에 관한 사항	5%
	위험관리 체계 운영	· 위험관리체계 운영의 적정성 및 법 제12조, 시행령 제12조, 감독규정 제11조에 관한 사항	5%

위험가산자본의 산정: 감독규정 별표 5

(추가적 위험평가 등급별 위험가산자본 산정기준)

▶ 위험가산자본의 산정

= 최소요구자본합계액 (등급별 산출) x 가산비율 (추가적인 위험평가 등급별 산출)

▶ 등급별 가산비율의 제시

< 등급별 위험가산자본 규모(%) >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소등급	+ 0 -	+ 0 -	+ 0 -	+ 0 -	+ 0 -
(그룹위험)	(거의 없음)	(조금 있음)	(부분적 존재)	(다소 높음)	(매우 높음)
가산비율(%)	0 0 0	1.0 2.0 3.5	5.0 7.0 8.0	10.0 12.0 14.0	16.0 18.0 20.0

전이위험 산정과 검토요소

- ▶ 복합금융기업집단 차원의 전이위험 산정의 문제
 - ▶ 현행법의 전이위험 평가모형은 복합금융기업집단 차원의 전이위험 산정에 부적합할 가능성
 - ▶ 복합금융기업집단의 전이위험은 일어날 확률이 낮지만 일어나면 충격이 커 일반적인 신용위험 등과 달리 대수의 법칙이 적용되기 어렵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
 - ▶ 기업집단 계열사 수가 충분히 크지 않고 계열사들의 규모 차이에 따른 문제로 인해 자본규제가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 (‘전이위험과 다각화 간의 관계’ 참고)
 - ▶ 대형 계열회사의 부도에 기한 전이위험 산정시 고려요소
 - ▶ 참고: 현행 금융복합기업집단법상 고려사항 (법 제14조 제2항)
 - ▶ 1. 소속금융회사 간 **자본의 중복이용**
 - ▶ 2. 내부거래 또는 위험집중에 따른 **손실 가능성**
 - ▶ 3. 기업집단 내부통제체계 또는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체계 취약성 따른 **위험전이 가능성**
 - ▶ 4. 소속비금융회사(와)의 이해상충/재무·경영 위험 등에 기한 기업집단 **부실 가능성**
 - ▶ 5. 기타 통상적인 금융거래 외의 요인으로 인한 위험 발생 가능성

EU 규제동향

▶ EU의 규제 동향

- ▶ EU 집행위원회(EU Commission)는 2020.12.15. 디지털서비스법(안)(Digital Services Act) 및 디지털시장법(안)(Digital Markets Act)을 EU 의회 및 EU 정상회의(European council)에 제안
- ▶ DSA 법안의 제안 목적은 모든 디지털서비스(온라인마켓플레이스 및 기타 온라인플랫폼 등을 포함)에 관한 포괄적인 규칙의 정립임

▶ EU 디지털서비스법(안) (proposed DSA)

- ▶ 디지털 서비스의 규모/영향 고려하여 EU 차원에서 광범위한 영업행위 규제 부과
 - ▶ ① 초거대 규모의 플랫폼이 그 시스템에 해악을 끼치지 못하도록 위험기반(risk-based) 조치 의무
 - ▶ ② 온라인상 광고 및 소비자에게 콘텐츠를 추천하는데 사용되는 알고리즘을 포함하여 광범위한(wide-ranging) 투명성 확보
 - ▶ ③ 플랫폼의 핵심데이터에 연구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것을 포함하여, 플랫폼의 운영방식을 조사할 새로운 권한
 - ▶ ④ 단일시장에 걸쳐서 효과적인 집행조치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공공당국 간의 혁신적인 협력 절차 등

양기진 (2021.12), 222면

Jurisdiction	Regulation	Scope	Ex ante or ex post?		Instrument			
			EX A	EX P	BOP	INT	TPP	PRO
China	Platform Antimonopoly Guidelines	All online platforms. Additional provisions for "essential facilities", as well as provisions to identify potential abuses by dominant platforms.	✓	✓		✓	✓	✓
China	Regulation on non-bank payment service providers*	Non-bank institutions that provide payment services for natural persons, legal persons and other organisations.	✓	✓		***	***	***
EU	Digital Markets Act*	"Gatekeepers" with a strong, entrenched, and durable economic and intermediation position.	✓	✓**		✓	✓	✓
US	Competition and Antitrust Law Enforcement Act* (CALERA)	"Dominant" firms that have >50% of total market share or "significant" market power.	✓	✓	✓			
US	Augmenting Compatibility and Competition by Enabling Service Switching Act* (ACCESS Act)	Platforms that satisfy criteria for (i) monthly active users (individual or business); (ii) market capitalisation; and (iii) critical trading partner status.	✓	✓**		✓		
US	Platform Competition and Opportunity Act*	Identical scope as the ACCESS Act.	✓		✓			
US	American Choice and Innovation Online Act*	Identical scope as the ACCESS Act.	✓	✓**		✓	✓	✓
US	Trust Busting in the 21st Century Act*	Dominant platforms, determined by evaluating the (i) extent and durability of market power; (ii) government involvement (contracts etc), (iii) exclusivity agreements; (iv) network effects; and (v) vertical integration.	✓	✓**	✓		✓	
US	Bust up Big Tech Act*	Platforms that satisfy criteria for (i) yearly active users; and (ii) total revenue.	✓		✓		✓	

빅테크 규제관련: 경쟁법 규제현황

- BOP : 증명책임 전환
 - shifting of the burden of proof from the regulator to the firm engaging in a merger or acquisition;
- INT : 제3자와의 상호호환성
 - interoperability with third parties;
- PRO : 기업사용자들의 제품개선 및 플랫폼 미경유 계약 체결을 허용
 - allowing business users to promote and offer products and services and conclude contracts outside the platform;
- TPP : 자시제공 및 제3자 제공 상품등을 동등취급
 - equal treatment of own and third-party products or services

빅테크 규제 관련: 개인정보 측면

▶ 개인정보의 보호 vs 제공(data-sharing) 관련 적극적 규제 필요

	EU	US	China
Data protection			
Collection and use of personal data			
<i>Of which: Lawfulness, fairness and transparency</i>	√	√	√
<i>Purpose specification</i>	√	*	√
<i>Security</i>	√	√	√
Users' data rights			
<i>Of which: Consent and access</i>	√	*	√
<i>Rectification and deletion</i>	√	*	√
<i>Data portability</i>	√	*	√
Data-sharing			
Open banking			
<i>Approach: prescriptive, facilitative**, market-driven***</i>	Prescriptive	Market	Market

• 정도:

Comprehensive

Partial

Early stages

- *: 연방법 부재 but 논의 진행 중
- Facilitative: 당국이 이미 가이드라인 및 모범기준 발령 등
- Mkt driven: 제3자에게의 정보 제공을 의무화 또는 금지하는 명시적인 규칙이나 가이드라인이 없음

빅테크 개인정보 규제: 중국 동향

- ▶ 중국의 개인정보 공유 관련 규제
 - ▶ 신(新) 정보안보법 (new Data Security Law, 'DSL'): 2021.9.1. 시행
 - ▶ 국가안보 목적으로 개인정보의 이용, 수집 및 보호를 망라하는 규제
 - ▶ 개인정보보호법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PIPL'): 2021.11.1. 시행
 - ▶ 목적: 개인정보 관련 권리 및 이익을 보호, 개인정보 처리를 규율, 개인정보의 합리적 이용을 촉진
 - ▶ 주된 일반적 내용: 개인정보주체의 동의 등 개인정보 수집근거를 마련, 개인정보에 관하여 각 개인에게 다양한 권한(데이터 이동권 포함)을 허용 (Art.45)
 - ▶ 빅테크 관련: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준법감시 시스템(compliance system)을 구비하고 개인정보 보호 위하여 주로 외부인사로 구성된 독립기구 설치를 의무화 (Art.58)

빅테크 근래 규제와 시사점

▶ 근래의 빅테크 규제

▶ 간접적인 규제 (activities-based)

- ▶ 개인정보 보호, 데이터 공유(제공), 기타 회사 자체의 운영상 탄력성을 강화하는 조치 등

▶ 직접적인 규제 (entity-based)

- ▶ 빅테크가 수행하는 활동들이 결합할 경우 발생할 위험들의 조율 목적
- ▶ 예컨대, 시장남용이나 데이터 지배를 방지하는 경쟁정책, 빅테크 자체의 안정성/탄력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빅테크 '그룹'을 대상으로 하는 규제

▶ 빅테크 관련 향후 대응 (예상)

▶ Entity-based 규제소지

- ▶ Very likely that new policy actions will **largely need to follow an entity-based approach.**

▶ 여러 당국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한 규제소지

- ▶ New policy actions will **require close cooperation between** competition, data and financial authorities, and enhanced international regulatory cooperation.



▶ 정책적 제언 (방향)

개선방향A

- ▶ 빅테크 관련 entity-based approach 보완 필요
 - ▶ 현행 복합금융기업집단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조정(adjusting) 필요
 - ▶ ‘복합금융기업집단’의 법상 정의를 사실상 개념으로 넓히는 것을 검토 가능
 - ▶ 명시적으로 인가된 금융업을 영위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금융업’을 영위하는 경우도 포함
 - ▶ 현재 금융복합기업집단법의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인 바 없음
 - ▶ 빅테크 등 비금융 계열사를 포함하는 복합금융기업집단에 대한 행위규제를 추가하는 한편 건전성 규제를 일부 조정
 - ▶ 빅테크 등 비금융 계열사의 규모가 금융 계열사에 비해 매우 큰 경우 자본규제를 통해 전이위험을 통제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는데 이 경우 금융계열사들의 비금융 계열사 자금지원을 감독하고 이를 차단하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
 - ▶ 비금융 계열사의 위험 크기에 따라 자금이전 감독 및 위험관리 조치를 강화하되, 차단 장치가 잘 갖추어진 경우 금융 계열사에 대한 자본 요구량을 낮추는 등 행위규제 완화 가능
 - ▶ 계열분리명령제는 가장 강력한 형태의 위험차단 행위규제라고 할 수 있음

개선방향B

- ▶ 복합금융기업집단에 대한 행위규제와 원칙중심감독(principle-based supervision)
 - ▶ 비금융계열사의 종류 및 결합 형태에 따라 규제 및 감독의 세부사항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원칙중심감독(principle-based supervision)의 요소 포함
 - ▶ 대형 계열사의 부도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어떠한 장치가 필요한지의 문제와 관련하여 금융당국이나 감독당국에서 미리 어떠한 장치가 필요한지를 규정하지 않고 비금융계열사의 부도위험이 충분히 차단된다는 것을 해당 금융그룹이 설명하도록 설명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음
 - ▶ 각 금융그룹은 구조나 형태, 비금융 계열사의 업종 등 여러 가지 면에서 큰 차이가 있으므로 일률적인 감독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음.
 - ▶ 각 그룹에 적합한 비금융계열사로부터의 전이위험 차단방안을 각 그룹의 대표회사가 설명하도록 하고 충분히 설명되지 못하는 위험에 대해서는 자본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 ▶ 각 금융그룹의 전이위험 차단장치를 점검하고 자본규제에 얼마만큼 반영할 것인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금융감독당국의 책무

개선방향C

▶ 빅테크 관련 entity-based approach

- ▶ 경쟁정책 (종래 행위기반 규제)에 있어서도 사전적/포괄적인 entity-based rules이 개발 중
 - ▶ 빅테크의 시장 침투력 및 경쟁 왜곡 속도를 고려하면 시장 경쟁을 보전하기 위하여 회복 불가능한 손해 발생을 방지하고자, 경쟁당국은 비효율적인 종래의 사후적(ex post) 접근방식 대신 사전적(ex ante) entity-based rules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중 (p.6)

▶ 빅테크 관련 activities-based approach

- ▶ 개인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 제공(data-sharing)에 관련 필요시 보다 사전적/적극적 규제 검토 가능
- ▶ 빅테크 기업의 잠재적인 행위 (이해상충) 이슈 규제
 - ▶ 빅테크 관련 이해상충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법은 없으나, EU의 DSA 법안이 가장 진전된 형태
 - ▶ DSA 법안은 초거대 온라인 플랫폼에 대하여 광범위한 규제를 예정
 - ▶ 빅테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기능 또는 이용이 초래할 시스템 리스크 관련 위험을 산정할 의무를 포함
 - ▶ 이때 시스템 리스크(systemic risks)란, 초거대(very large) 온라인플랫폼이 (i) 불법적 내용을 배포하거나 계정을 통하여 널리 그러한 내용에 접근하도록 악용되거나, (ii) 기본권으로 보호되는 권리(사생활의 권리, 차별받지 아니할 권리 등)를 침해하거나, (iii) 공중보건, 미성년자 .. 및 공공안전의 보호에 실제적 또는 예견가능한 부정적 영향을 끼치면서 의도적으로 왜곡되는 경우를 말함 (pp.13-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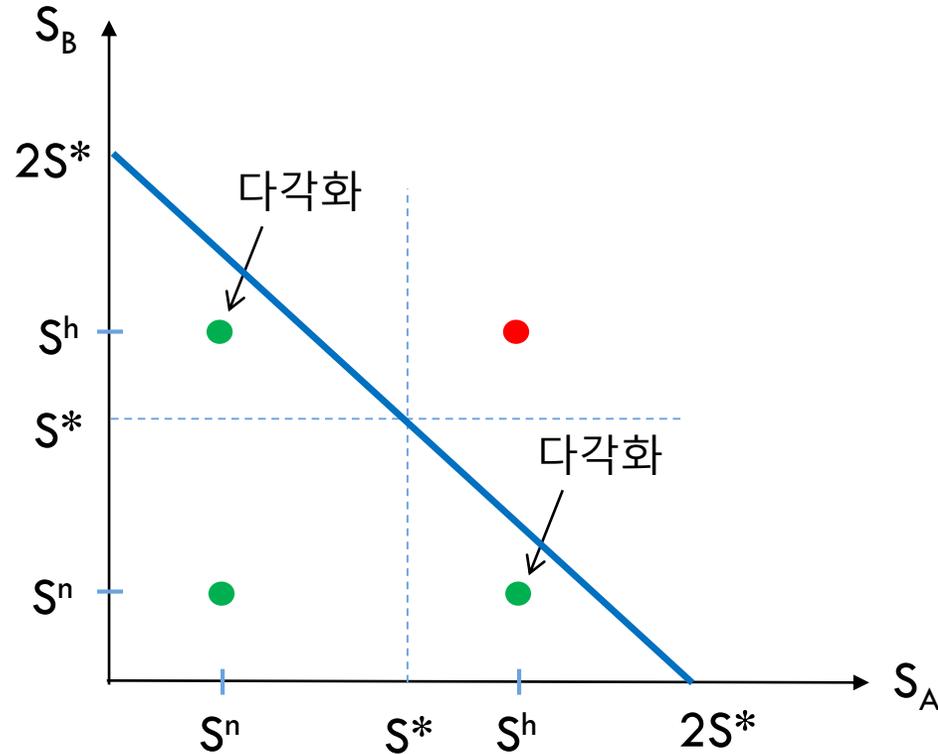
이하 참고: 전이위험과 다각화 간의 관계 사례

- 한 금융그룹 내의 두 계열사: A와 B
 - A가 은행, B가 보험사
 - 또는 A가 유럽 은행, B가 미국 은행
 - 또는 A가 금융회사, B가 비금융 계열사 등
- A와 B는 각각 충격 s_A 및 s_B 에 노출
 - 충격은 손실이나 자산 부실화 등 다양한 형태
 - 충격의 크기는 일반적인 수준(normal, s^n)이거나 높은 수준(high, s^h)의 두 가지인데 일반적인 수준의 충격이 실현될 가능성은 $p(= \text{Prob}(s^n))$

A와 B가 대칭적인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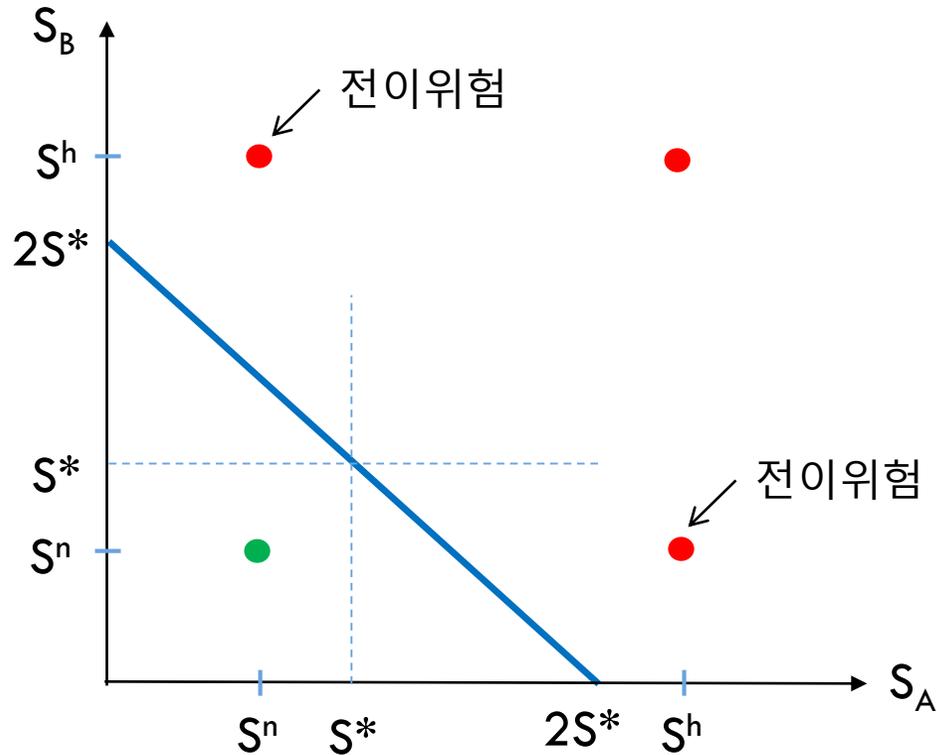
- A와 B의 자본 수준이 s^* 정도의 충격을 견딜 수 있다고 가정($s^n < s^* < s^h$)
 - 만일 $s_A > s^*$, A가 부실화
 - A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경우 A의 부실 확률은 $(1 - p)$
 - $(1 - p)$ 가 높지 않아 감독당국의 허용 수준이라고 가정
- A와 B가 결합되어 있을 때
 - A와 B로 구성된 금융그룹이 부실하게 되는 때는 A와 B의 충격이 금융그룹의 자본 수준을 넘어서는 경우 ($s_A + s_B > 2s^*$)

다각화의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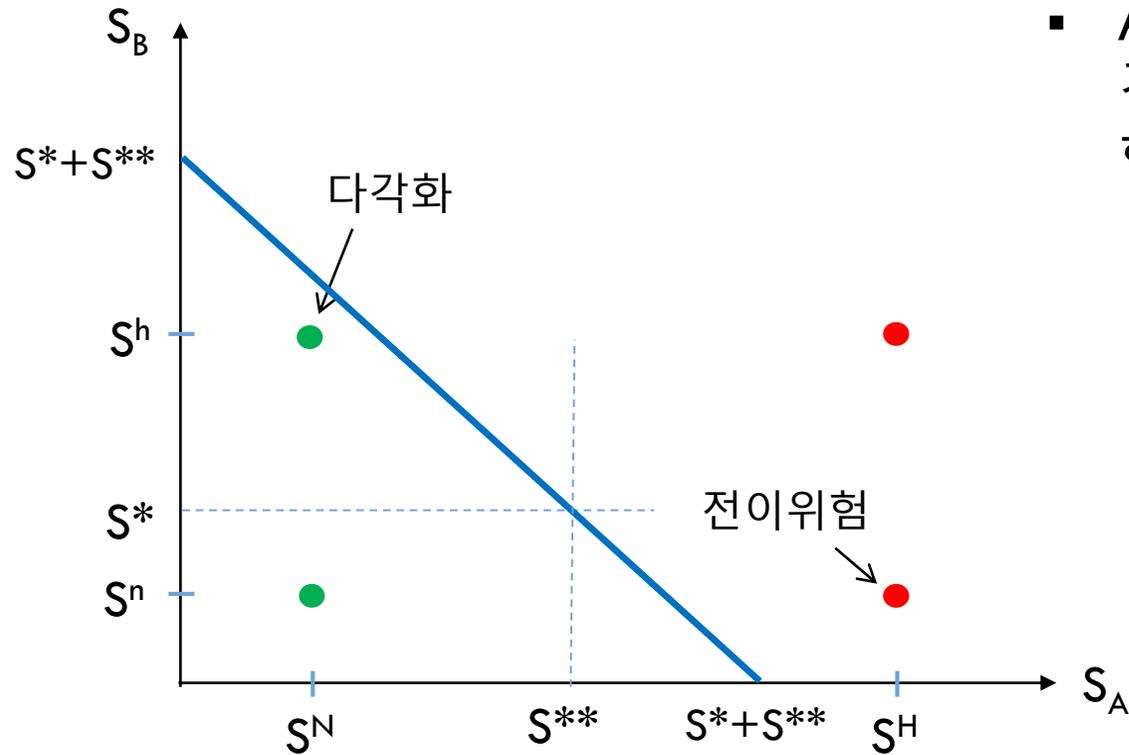
- A와 B의 결합에 따라
부실 위험이 감소
 - A와 B의 충격이 독립
적일 때 독립적인 A와
B의 부실위험 $(1 - p)$
보다 낮은 $(1 - p)^2$

전이위험의 경우



- A와 B의 결합에 따라
부실 위험이 증가
 - A와 B의 충격이 독립
적일 때 독립적인 A와
B의 부실위험 $(1 - p)$
보다 높은 $(1 - p^2)$

A와 B가 비대칭적인 경우



- A의 위험이 B보다 큰 경우 다각화 및 전이위험이 동시에 발생 가능
 - A의 높은 위험(s^H)이 B의 높은 위험(s^h)보다 큰 경우 B는 A로부터의 전이위험에 노출

참고문헌

- ▶ 강경훈, “(복합)금융그룹 통합감독- 전이위험을 중심으로”, FiRec 금융정책패널 한국금융학회 발제자료 (2018. 12. 6.)
- ▶ 양기진, “AI와 법적환경 변화연구*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보험판매를 중심으로”, 법과 기업 연구 제11권 제3호,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12)
- ▶ 이재연,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 한국금융학회 발제자료 (2018.10.17.)
- ▶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BCBS), “Guidance on the application of the Core Principles for Effective Banking Supervision to the regulation and supervision of institutions relevant to financial inclusion” (September, 2016)
- ▶ Restoy, Fernando, “Fintech regulation: how to achieve a level playing field”, Financial Stability Institute Occasional Paper No.17, BIS (Feb. 2021)
- ▶ Crisanto, Juan C., Johannes Ehrentraud, Aidan Lawson & Fernando Restoy, “Big tech regulation: what is going on?”, Financial Stability Institute FSI Insights on policy implementation No. 36, BIS (Sept. 2021)

감사합니다